

#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정진철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26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2월 4일  
발 의 자 : 정진철 의원 (1명)  
찬 성 자 : 김화숙·권수정·박기재·  
김경우·정진술·김태호·  
노식래·김재형·임종국 의원 (9명)

## 1. 제안이유

-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다니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으로 서울시는 운송수입금 등이 기준운송원가에 미달하는 운송사업자에게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. 그 규모가 2019년 기준 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약 200억 원, 사업자 평균 약 3억 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독립적인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에 문제가 되고 있음.
- 또한, 시장에게 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자산, 부채, 자본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의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독립적인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마을버스의 건전운행을 도모하고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재정지원 기준을 신설함(안 제3조의2).
- 나. 외부회계감사는 2020년 사업연도부터 시행하도록 적용례를 신설함(안 부칙 제2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 
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외부회계감사)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 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) 외부회계감사는 2020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 행	개    정    안
<u>〈신    설〉</u>	<p>제3조의2(외부회계감사)   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 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